

의안번호	제252호
------	-------

발 의 연 월 일
2024. 3. 4.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홍원표 의원 외 2인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원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52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홍원표, 장순관, 김영진
의원(3인)

1. 제안이유

예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과 기능(안 제3조~제4조)
- 다. 교섭단체의 등록절차와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안 제5조~제6조)
- 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3. 5. ~ 3. 11. [7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예산군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구성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대표의원

소속정당	성명	서명	비고

소속의원 명부

연번	소속정당	의원성명	서명	비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예산군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소속의원 날인명부

연 번	소 속 정 당	의 원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변 경 일 자	당초 정당	변경 정당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또는 ○ ○ ○ 의원 (날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21., 일부개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제7조 지원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인용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홍원표 의원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예산001			
정책명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조성호	전화번호	041-339-70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